

HANA FX TRADING SYSTEM 거래약정서

이 약정서는 "약정 고객"과 (주)하나은행(이하"은행"이라 함)이 제1조의 거래를 함에 있어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적용 거래)

이 약정서는 "약정 고객"(이하에서, "약정 고객"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약정서 제4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은행"의 고객을 의미함)과 "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은행"의 『HANA FX TRADING SYSTEM』(이하"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한 "현물환 거래", "선물환 거래" ("자유만기선물환" 포함), "외환스왑거래", "시장평균환율거래"에 적용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고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외환거래관련 법규,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그 밖의 상관례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1. "FX시스템거래"란 『HANA FX TRADING SYSTEM』을 통한 "현물환거래", "선물환거래", "외환스왑거래", "시장평균환율거래"를 말한다.
2. "현물환(Spot)거래"라 함은 내국통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를 매매계약체결일 당일(value today) 결제, 다음 영업일(value tom)결제 혹은 다음 영업일의 익영업일(value spot)결제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선물환(Forward)거래"라 함은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 상호간에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는 장래의 특정 기일에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외환스왑(FX Swap)거래"라 함은 만기와 거래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외환거래가 하나의 외환상품으로 구성된 외환거래를 말한다.
5. "금융시장"이라 함은 "은행"이 본 조 제1호의 거래를 행하고 있거나 행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금융시장, 기타 동 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모든 금융시장을 포함한다.
6. "시스템 시장환율"이라 함은 거래체결시점에서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또는 환율을 기초로 은행이 "약정 고객" 앞 제시하는 호가를 말한다.
7. "시장평균환율(Market Average Rate, MAR환율)"이라 함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 은행들이

거래한 달러 원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된 환율로, 외국환거래 중개회사들이 당일 중 계산하여 각 외국환 은행에 통보한 환율을 말한다. "시장평균환율"거래는 시장평균환율 현물환(매매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결제) 거래와 시장평균환율 선물환 거래를 포함한다.

8. "시장이 주문"이라 함은 고객은 금액만 지정하고, 주문완료시점에 은행이 호가 제시한 "고객적용환율"로 외화의 매입/매도 거래가 체결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9. "지정가 주문"이라 함은 고객이 원하는 환율을 사전에 지정주문하고 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국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 3 조 (적용법규 등)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들 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거래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 및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4 조 (약정의 체결 및 해지)

① 본 약정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와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 약정에 의한 "FX시스템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 고객"은 은행이 정한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HANA FX TRADING SYSTEM 거래약정서』 기명 날인 제출 및 『HANA FX TRADING SYSTEM 이용신청서』 영업점 앞 별도 서면 신청

2.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신청

② "약정 고객"은 이 약정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약정에 의한 모든 "FX시스템거래"의 결제가 완료되어야 해지 가능하다.

③ "FX시스템거래"의 이용 신청과 해지는 "은행"의 관리 영업점에서 한다.

제 5 조 (거래시간 및 거래한도)

① "약정 고객"은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거래시간과 거래한도 이내에서 "FX시스템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 한도는 "약정 고객"의 수출입 실적 및 외환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HANA FX TRADING SYSTEM』을 통하여 "약정 고객"에게 안내한다.

1. 모든 "FX시스템거래"는 "은행"과 협의하여야 하며, "은행"은 "약정 고객"별로 개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2. "현물환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 담보금 등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3. "선물환 거래" 및 "외환스왑거래" 시, "약정 고객"은 관리 영업점을 통하여 사전에 장외파생상품기본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파생상품 보증금 적립비율, 파생상품 보증금 면제한도는 『HANA FX TRADING SYSTEM』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FX시스템거래" 이용 시간은 『HANA FX TRADING SYSTEM』에 게시하며, "은행"은 이를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약정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 6 조 (거래주문 및 체결)

- ① 주문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FX시스템거래" 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 ② 지정가 주문은 시장환율이 "약정 고객"이 지정한 환율 이상 또는 이하로 변경되었을 때 주문이 체결된다.
- ③ 지정가 주문의 주문 유효기일은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기일로 하며, 안내한 기일까지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거래중지)

외환시장의 폐장 또는 환율의 급등락 및 시스템 오류의 경우 "은행"은 시장 환율의 제시를 중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 고객"에게 서비스 일시 중단에 대한 사실 및 중단 사유 해소 등을 유선이나 이메일 등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 『HANA FX TRADING SYSTEM』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 8 조 (지급방법)

- ① "약정 고객"과 "은행"은 "FX시스템거래"의 조건에 따라 매 지급일에 원화 또는 외화로 각자 지급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 ② "약정 고객"과 "은행" 상호간의 모든 지급은 총액 지급 (gross payment)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 차액 지급(net payment)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결제일은 "은행"의 영업일 이어야 하며, 부득이 결제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은행" 영업시간 이내)

제 9 조 ("은행"의 책임 등)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약정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라 한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약정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약정 고객"과 체결한 경우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약정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약정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다.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해킹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 "약정 고객"이 다목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약정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은행"은 "약정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약정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은행"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약정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당사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및 본 약정서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